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 제정:	1994. 12. 23.	
· 개정:	1995. 3. 3.	2019. 8. 6.
	1996. 12. 20.	2020. 9. 28.
	2010. 5. 19.	2022. 2. 8.
	2012. 2. 27.	2022. 8. 29.
	2013. 2. 15.	2023. 2. 2.
	2014. 2. 24.	2023. 8. 1.
	2014. 8. 21.	2024. 2. 1.
	2016. 7. 11.	2024. 8. 13.
	2017. 2. 20.	2024. 8. 13.
	2018. 8. 1.	2025. 2. 7.

< 목 차 >

1.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1
2.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 및 추천
관련 지침 ----- 6
3. 분야별 심사기준 ----- 35

1.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각종상품(이하 “경남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품질을 심의하거나 품질 우수 경남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및 QC총괄 관련 실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의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 시험, 검사기관의 종사자
2.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생산자 단체의 종사자
3. 기타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 및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1. 경남상품 품질 심의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운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제1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산물분과, 수산물분과, 축산물분과, 공산품분과, 공예품분과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관련 실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지침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지명하며, 분과별 위원은 중복 위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기능)

1. 제3조 제1호와 관련한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 경상남도 추천상품에 관한 심의의결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및 심사)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의장을 호선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개진한 의견으로 간주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방법)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경남상품의 품질을 심의하여 그 우수성이 인정되거나 또는 이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의 QC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QC마크는 당해 상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보칙) 기타 위원회 운영 및 기능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2.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 및 추천 관련 지침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 및 추천 관련 지침

1. 신청절차 및 사용 지정

가. 지정 신청

- ① QC마크 사용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생산자는 당해품목의 생산지 (또는 가공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품목별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산자가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생산 출하여건 개요서, 품질준수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농산물: 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서(해당자만)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해당자만) / 제품 원료 원산지 확인서(가공식품의 경우 원료 각각의 원산지 확인서 모두 필요) / 품목제조 보고서(원재료, 성분명, 배합비율 포함하여 제출) / 각종 인증서 사본(지침에 명시되어있는 인증사항 외 제출 금지) / 공장등록증(해당자만) / 품목별 연간매출(생산액) 실적자료 / 경상남도 브랜드 쌀 평가회 상장(임의 해당자만)
 3. 수산물: 어업권원부등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해당자만), 제품 원료원산지 확인서(가공식품의 경우 원료 각각의 원산지 확인서 모두 필요), 품목제조보고서(원재료, 성분명, 배합비율 포함하여 제출), 인증 취득현황, 공장등록증(없을 시 건축물관리대장), 최근 2년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없을 시 품목별 연간 매출(생산액) 실적자료), 수산물(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이상 증빙자료, 신청품목 생산기간 2년이상 증빙자료
 4. 축산물
 - 미가공 축산물: 축산업 허가증, 생산경력 5년이상 증빙자료, 축종별 1일(연간) 축산물 생산량 실적자료

- 가공 축산물: 공장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경력 5년 이상 증빙자료, 품목별 연간 제품생산량, 품목별 연간매출액(생산액) 실적자료
- 5. 공산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현황, 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품목별 연간매출(생산액) 실적자료
- 6. 공예품: 공예품 분야 조사표(수상경력증빙(해당자만), 제품사진(필수))

③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천기준에 미달되는 상품은 제외하고 대상품목, 지역명품, 특산품 등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한다.

나. 심 의

- ① 도지사는 시군 추천내용을 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위원장은 각 소관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조치한다.
- ② 분과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시험·검사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심사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④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상남도 추천상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 심의 시 제품 원료의 원산지는 국내산 95% 이상에 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⑥ 가공식품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원료가 20% 이하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는 심의 제외한다.

다. 판 정

- ①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QC 표시의 사용지정 여부를 판정한다.
- ② 동일 품목 과다 지정 방지와 품목별 대표상품 육성을 위하여 동일 품목은 신청 상품의 7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③ 경상남도 브랜드 쌀 평가회에서 수상한 상품(우수 이상)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 ④ 미가공 식품(농·축산물)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 규정에서 고시한 최상위 등급 규격에 한하여 지정한다.
- ⑤ 분야별 심사표(기준) 세부항목과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필요 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QC마크 사용 지정

- ① 분과위원회에서는 최종심사보고서를 총괄부서(국제통상과)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 ② 총괄부서는 표시사용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시군에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QC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어 표기의 지정서 발급 요청 시 [별지 제9호 서식] 지정서를 외국어로 작성하여 신청하고 총괄부서는 외국어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정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 조건 예시 〉

지정조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에 의한 품질 인증을 받고 인증 마크가 표시된 포장박스(용기)에 한하여 QC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③ QC 표지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QC지정 유효기간

- ① QC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품목별 유효기간은 분과위원회에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항의 기한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도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장

나. 관리방법

- ① 시장·군수는 품목별 소관 부서 공무원을 당해 QC지정품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② 출하 전 조사
 - 조사 공무원은 필요 시 당해 품목의 출하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 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출하 전 조사보고서를 도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하품 조사
 - 조사 공무원은 QC지정 출하품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단, 신선 농산물 등 계절상품은 분기 1회 이상), 출하품의 내용과 표시 사항의 일치 여부, QC표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공무원은 출하품 조사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출하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정리한 [별지 제7-1호 서식]을 도 분과위원회 소관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장은 시·군이 작성한 출하품 조사보고서를 [별지 제7-2호 서식]에 취합하여 총괄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조사 시 시료품을 채취하여 공인 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QC마크 사용취소 등

가. 분과위원회에서는 시·군보고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처분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처분할 때에는 해당 생산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QC표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표시와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이 심사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종류는 시정, QC표시 사용의 정지 및 취소로 정하며 그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정: 고의성이 없으며 간단한 보완 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표시사용의 정지: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사용의 취소: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생산자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다. “나항”의 규정 중 QC표시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생산자는 시판품, 출하품에 부착한 QC표시 또는 미리 인쇄한 QC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라. QC표시의 사용을 지정받은 자로서 2년 이상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QC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마. 분과위원회는 처분 심의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 비치

- ① 국제통상과는 QC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표시품의 판매 또는 선전

- ① 생산자는 QC표시의 사용을 지정받은 품목을 표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판매하거나 선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시품이 아닌 품목이 QC 표시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서 재교부

- ① 지정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해 재교부 신청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영문 지정서 필요 시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상·하반기 지정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

[별표 1]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지



<도안요령>

◎ 마크(MARK)의 색상(COLOR) 및 문자(LOGOTYPE)

- M A R K : 녹색(C : 70 + Y : 70), 청색(C : 100 + M : 100)
- 테두리선 : 청색(C : 100 + M : 100)
- 바탕 색 : 백색
- LOGOTYPE : 청색(C : 100 + M : 100)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명칭)			구성원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 개)	
				휴대전화	(비공개)	
신청품목	품목명 (제품명)			인증현황		
				생산경력	년	
생산계획	품목 (품종, 규격)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산면적	m ²	생산능력 (일)	톤	전년도 생산량	톤
	생산지				전년도 매출액	천원

위와 같이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업체명, 생산품목,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 준수 각서 1부
 3. 계약재배약정서, 품종확인서, 생산자 확인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 현황, 공장등록증, 전년도 매출실적 등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인

- 명 칭: 법인·단체 등의 상호 기재
- 구성원: 법인·단체 등의 구성인원(회원수)을 기재
- 성 명: 대표자 성명 기재
-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법인·단체의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신청품목

- 품 목 명: QC 지정 받고자 하는 품목명(제품명) 기재
- 인증현황: QC 지정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각종 품질인증 번호와 인증기간 기재
- 생산경력: 농작물 재배경력, 수산물 생산경력, 제품 생산경력을 기재하되,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가등록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확인

□ 생산계획

- 품 목: QC 지정을 받고자 하는 품목(상품명)
- 생산기간: 상품의 연중 생산기간 기재(예, 연중, 10월 중순 ~ 12월 초 등)
- 출하기간: 상품의 유통시기 기재(예, 연중, 10월 중순 ~ 익년 3월 말 등)
- 생산면적: 농산물의 재배면적, 가공식품·공산품·공예품은 공장면적, 수산물은 양식면적을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가등록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확인
- 품목(품종, 규격): 상품의 품종 또는 규격(포장단위) 기재
- 전년도 생산량: 전년도 생산량을 톤으로 환산하여 기재
- 생 산 지: 농지 소재지, 수산물의 생산지(해역), 공장소재지 등을 기재
- 전년도 매출액: QC를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재

1.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신청인	단체명 (명칭)		구성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개)		
			휴대전화	(비공개)		
신청품목	품목명 (제품명)		생산경력	년		
			인증현황			
생산계획	품목 (품종,규격)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산면적		생산능력 (일)	톤	전년도 생산량	톤
	생산지				전년도 매출액	천원
생산출하여건		개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p>※기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여건: 영농(영어)종사경력, 제품 생산경력, 단체 조직 및 운영경력, 상품의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1일 생산능력, 연간 상품생산량,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및 지도, 포장방법 및 표시내용 등을 기재○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기타 우수상품 품질등록 현황 표기 예) KS, Q, 품, 品 획득 및 전통 식품, HACCP, LOHAS 등	

2. 품질 준수 각서

○ 품 목 :

본인은 위의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하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3. ()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서

계약생산자		재배포장		계약재배 생 산 량	공급확인 품종		계약생산자 서 명 (인)
성 명	주 소	지 번	면 적		품종명	공급수량	

위와 같이 계약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품종(종자)공급확인 : ○ ○ ○ 장 (서명 또는 확인)

○ 생 산 자 확 인 : ○ ○ ○ 장 (서명 또는 확인)

○ 신 청 자 : (서명 또는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사현황 총괄(○○분과위원회)

시 군	구 분	합계(A+B)		신규신청(A)		재신청(기지정 B)		미신청(C)		'13. 기간 만료업체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합계	소계	0	0	0	0	0	0	0	0	0	0
	농산물	0	0	0	0	0	0	0	0	0	0
	수산물	0	0	0	0	0	0	0	0	0	0
	축산물	0	0	0	0	0	0	0	0	0	0
	공산품	0	0	0	0	0	0	0	0	0	0
	공예품	0	0	0	0	0	0	0	0	0	0
창원시	소계	0	0	0	0	0	0	0	0	0	0
	농산물	0	0								
	수산물	0	0								
	축산물	0	0								
	공산품	0	0								
	공예품	0	0								

1.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내역

연번	시 군	구 분	부류	합 계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지정품목	비고
				업체	품목						
합계				0	0						
1		농산물									
2		수산물									
3		축산물									
4		공산품									
5		공예품									
계				6	13						
	소계	농산물		1	2						
	창원시	농산물	농산물	1	2						
	창원시	농산물	농산물								
	소계	수산물		2	4						
	창원시	수산물	수산물	1	1						
	창원시	수산물	수산물	1	3						
	창원시	수산물	수산물								
	창원시	수산물	수산물								
	소계	축산물		1	3						
	창원시	축산물	축산물	1	1						
	창원시	축산물	축산물	1	2						
	창원시	축산물	축산물								
	소계	공산품		1	3						
	창원시	공산품	공산품	1	1						
	소계	공예품		1	1						
	창원시	공예품	공예품	1	1						

2. 경상남도 추천상품 신청자 중 미지정 내역

시 군명	구 분	합 계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신청품목	미지정사유
		업체	품목						
경상남도	합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소계	소계	3	5						
창원시	농산물	1	3						
창원시	농산물								
창원시	농산물								
창원시	공예품	1	1						
창원시	공예품	1	1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사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체명 (명칭)			구성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 개)	
				휴대전화	(비공개)	
신청품목	품목명 (제품명)			생산경력	년	
				인증현황		
생산계획	품목 (품종,규격)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산면적		생산능력 (일)	톤	전년도 생산량	톤
	생산지				전년도 매출액	천원

2. 심사결과

분야	항목	배점	평가점수	판정	
				적	부
계	개 항목				

3. 심사의견

※ 항목별 지정여건 세부 심사자료 1부. 끝.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또는 확인)

성명 : (서명 또는 확인)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서

지정번호 :

생 산 자 :

주 소 :

품 목 명 :

유효기간 :

위와 같이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직인]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현황(총괄)

구분	계		분 야 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합계												
창원												
진주												
:												
:												
:												
거창												
합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대장

시군	구분 (분야)	합계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정 품목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유효 기간	비고
		업체	품목									
합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출하품 조사보고서(○○시·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하 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사대상

- 지정번호:
- 업체명:
- 주소:
- 품목명:

2. 조사결과

구분	적정	부적	조사자의견
계	M/T	M/T	
QC표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표시와 내용물의 일치여부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수준 확보의 가능 여부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검토 의견서

신청현황

신청인	주소	
	단체명(대표자)	
신청품목명		

검토의견

생산출하여건	검 토 의 견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5. 종합검토	

위와 같이 검토하여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하고자 추천합니다.

년 월 월

추천자

시장·군수(인)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당 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정품목 (지정번호)	예)0000김치(1601100, 지정일자)		
변 경 요 청 사 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정품목 (지정번호)	예) 0000김치(1601100, 지정일자)		
	변경사유			
	변경내용			

※ 재교부 시에는 변경요청사항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생산품목, 연락처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존 발급된 지정서 원본(변경 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변경 시)
 3. 낡은 지정서(재교부 시)
 4. 분실 사유서(분실 재교부 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 분실사유서

신고인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분실사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에 분실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공예품 조사표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주소			
신청품목 및 가격	· 품목명: ○○○○원(예시) · · ※ 유의사항 ①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신청하는 공예품, 공예품 세트 사진 및 가격 기재 (공예품 가격 정확히 기재) ② 장신구 세트, 수저 세트 등과 같이 필수 세트 품목이거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 한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품목 1점으로 간주함 ③ 품목 1개당 조사표 1개 작성 필수		
생산자의 수상경력 (최근 3년 이내 공예품 관련)	· 2021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특선(예시) · 2022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특선(예시) ※ 정부 또는 지자체 주최·주관하는 공예품 관련 공모전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생산자 생산경력	·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연간생산량 / 금액	· 연간생산량: · 연간생산금액:		
연간판매량 / 금액	· 연간판매량: · 연간판매금액:		
원자재의 조달 용이성과 제품 생산시설, 장비 구비 여부	·		
국산원자재 사용 여부	·		
그 밖의 사항(특이사항)	· ※ 생산자가 무형문화재, 최고 장인 등 특이사항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시군 ○○○○○과 직급 성명			

(업 체 명)

품목명		가격(원)	
사 진			
품목명		가격(원)	
사 진			

3. 분야별 심사기준

1. 농·수·축산물

가. 추천대상

농·축산물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가공식품) 인증획득 품목
- ②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 등의 품질인증 품목
-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품목
-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 품목

※ (예) 무농약농산물, 유기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 ⑤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ISO(국제표준기구) 인증 품목

※ 가공식품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업체에 대한 HACCP, ISO 등 확인 필수

- ⑥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거나 재배되는 품목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품목 중 수출 또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출품 등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된 품목
- ⑦ 「동물보호법」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 ⑧ 「축산법」에 의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품목

수산물

- ① 농·축산물 추천대상 준용
- ② 수출 또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출품 등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된 품목
-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
- ④ 지역 특산 수산물

나. 추천기준

농산물(①~④항 전부 만족)

- ① 재배면적이 곡류 및 과실류 5ha, 기타 2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단, 과실류는 사과, 배, 단감 등이고, 산딸기, 블루베리, 버섯, 시설재배,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농) 인증 농가는 1ha 이상(버섯 등 다단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을 재배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콩나물의 경우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200㎡ 이상의 면적 조건으로 잠정 시행한다.)

- ② 농작물 재배경력 5년 이상 또는 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신청 품목 생산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
- ③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당 연간 생산량이 비건조품 50톤, 건조품 0.5톤 이상인 품목. 단, 수제품(차류, 장류, 떡류 등)의 경우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별도의 추천기준을 정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④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서 신청 품목당 매출(생산)액이 2천만원 이상의 품목 단,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매출액 판단이 곤란한 품목은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유통 및 거래실적(금액)증명서 등으로 가능함

□ 수산물(①~③항 전부 만족)

- ① 최근 2년 간 품목당 평균 생산량이 미가공품 50M/T, 냉동품 50M/T, 염신품 20M/T, 자건품 10M/T, 기타 5M/T 이상
 - 수제품·고가품(캐비어류 등)의 경우 평균 생산량에 대해서 별도의 추천기준을 정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생산공정이 같은 다수 품목의 경우, 전 품목 생산량 50M/T 이상 및 개별 품목 생산량 3M/T 이상으로 한다.
- ② 최근 2년간 수산물 매출실적 평균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신청 품목 매출실적이 1천만 원 이상
- ③ 수산물 생산경력 5년 이상 또는 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신청 품목 생산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

□ 축산물(①~⑤항 전부 만족)

- ① 축산물 1일 생산량이 육류 1M/T, 계란 5만 개(단, 동물복지농장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는 9,000개), 메추리알 25만 개, 유제품 1M/T,(단, HACCP인증을 받은 목장형유 가공농장인 경우 유제품 연 50톤 이상), 꿀벌은 사육군수 500군 또는 연 생산량 10톤 이상 생산하는 양봉농가에 등록된 농가 및 생산단체, 농업법인
- ② 축산물 생산경력 5년 이상 또는 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인 자 단, 신청상품의 생산 구성원이 다수일 경우 상표등록 등 1년 경과한 업체
- ③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당 연간 생산량이 비건조품 50톤, 건조품 0.5톤 이상인 품목 단, 수제품, 목장형 유제품(시유를 제외한 치즈, 요거트 등)의 경우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별도의 추천기준을 정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④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서 신청 품목당 매출(생산)액이 2천만원 이상의 품목 단,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매출액 판단이 곤란한 품목은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유통 및 거래실적(금액)증명서 등으로 가능
- ⑤ 도내에서 생산 또는 균일한 브랜드 축산물을 가공·제조한 축산물(가공) 상품

다. 심사방법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품목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 HACCP 인증 품목(재지정에 한함) 등은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외 품목은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분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평점 심사
- ③ 서면 또는 현지 심사결과에서도 판정하기가 어려운 성분 규격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시험,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단, 수수료는 신청업체 부담)

※ 심사 시 추천상품의 샘플을 사전에 사용(시험·시식 등)해 본 조사 요원들의 의견이나 서면으로 제출된 검토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음

라. 판정

분야별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농·수·축산물중 미가공품은 [별표 1-1호], 가공품은 [별표 1-2호]의 심사표에 의한 심의결과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추천 적합으로 판정한다. 단, 상기 심사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은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판정할 수 있다.

- ① 심의위원이 평점한 결과 평균 70/100이상
- ②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 개수가 심의위원 전체 평균 1개 이하
- ③ “우수”로 평가된 항목이 “보통”으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미가공 농·수·축산물 심사표

품목		생산자		※ 평점란 원문자(○) 표기		
항 목	구 비 여 건			평 점		
				우수 (10)	보통 (5)	미흡 (3)
계						
1. 일반여건						
가. 생산자 자질, 조직 및 능력	○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고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상품의 생산 의욕과 「추천상품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 지역특산품으로서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 재배 생산물로서 차별화되어 있어 성과도가 매우 높은 경우					
다. 대외신용도	○ 이미 품질인증품을 출하하여 대외성과를 높인 경력이 있거나 대외적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라.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추천상품에 대한 판매처 요청 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 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2. 생산여건						
가. 생산포장 입지	○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영향이 없고 당해 품목의 재배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포장 면적의 확보 및 재배포장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자연적으로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나. 생산기술 수준	○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수준인 경우					
다.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 목표로 하는 품질 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3. 품질관리 여건						
가. 자체 품질 관리 수준	○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품질관리 열의도	○ 행정·지도기관 및 단체의 지도 및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 상품의 생산 및 규격화, 표시 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다. 품질관리 시설	○ 성능이 우수한 저장(건조·저온)·가공·선별·포장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자체 수송수단 보유로 판매처의 요구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여 선도유지가 될 수 있고 품질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가공 농·수·축산물 심사표

품목		생산자		※ 평점란 원문자(○) 표기		
항 목	구 비 예 건			평 점		
				우수 (10)	보통 (5)	미흡 (3)
계						
1. 일반여건						
가. 생산자 자질, 조직 및 능력	○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고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업체(단체)로서 고품질 상품의 생산 의욕과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 지역특산품으로서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 재배 생산물을 원료로 가공하여 성과도가 매우 높은 경우					
다. 대외신용도	○ 가공한 제품을 출하하여 대외성과를 높인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한 경력이 있어 대외적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라.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추천상품에 대한 판매처 요청 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 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2. 생산여건						
가. 공장입지·환경	○ 공장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하며, 작업장 환경이 청결하고 음용수의 수질 상태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생산기술 수준	○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 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수준인 경우					
다.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 목표로 하는 품질 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3. 품질관리 여건						
가. 자체 품질 관리 수준	○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품질관리 열의도	○ 행정·지도기관 및 단체의 지도 및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 상품의 생산 및 규격화, 표시 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다. 품질관리 시설	○ 성능이 우수한 저장(건조·저온)·가공·선별·포장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자체 수송수단 보유로 판매처의 요구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여 선도유지가 될 수 있고 품질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2. 공산품

가. 추천대상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획득 품목
-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KE 자) 획득 품목
- ③ 국제표준화 기구 ISO9000 획득 품목
-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정부 및 공인기관 품질인증 품목
※ 예) 안전인증,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등
- ⑤ 한국표준협회 로하스(LOHAS) 인증 품목

나. 추천기준

- ① 중소기업으로서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업체
- ② 회사 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방침이 확립되어 있는 업체

다. 심사방법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 품목이나, 공인연구기관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은 서면심사를 할 수 있되, 필요 시 현지 실사. 단, 여타 품목은 현지실사
- ② 분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평점 심사
- ③ 서면 또는 현지심사 결과에서도 판정하기가 어려운 성분 규격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단, 수수료는 신청업체 부담)
※ 심사 시 추천상품의 샘플을 사전에 사용(시험·시식 등)해 본 조사요원의 의견이나 서면으로 제출된 검토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음

라. 판정

[별표 2호] 심사표에 의한 심의결과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상기 심사 기준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은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판정할 수 있음

- ① 심의위원이 평점한 결과 평균 70/100 이상
- ②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 개수가 심의위원 전체 평균 1개 이하
- ③ “우수”로 평가된 항목이 “보통”으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공산품 심사표

품목	생산자	※ 평점란 원문자(○) 표기		
항 목	구 비 예 건	평 점		
		우수 (10)	보통 (5)	미흡 (3)
계				
가. 표준화 일반	○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및 관리 규정 등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			
	○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 생산에 적합한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임직원에게 대한 표준화, 품질경영, 제품 생산 등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나. 자재 관리	○ 자재 관리가 규정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관리 되고 있는가			
다. 공정 관리	○ 공정 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고, 규정 및 작업 표준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리기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 제품 품질	○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개별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제품 품질시험 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요구한 항목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마.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이 전사적(全社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바. 제조 설비 관리	○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 관리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 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설비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사. 검사 설비 관리	○ 시험 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 시험 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의뢰기관, 등 외부 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공산품 심사표

품목	생산자	※ 평점란 원문자(○) 표기		
항 목	구 비 예 건	평 점		
		우수 (10)	보통 (5)	미흡 (3)
계				
아. 생산기술 및 개선활동	○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는가			
	○ 부적합품이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고 있는가			
	○ 지속적 개선 활동(예시: 제안, 학습조직, 분임조 등)을 위한 제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사내표준 (개선활동 제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지속적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자.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이행	○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불량품 또는 소비자 불만 등으로 언론과 여론의 비판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NGO 단체 등)			
	○ 소비자 불만,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처리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가			
	○ 디자인은 소비자가 취급하기 좋고 견고하여 용량, 규격 등이 필요에 따라 충족되고 있는가			
차. 관계규정 이행 사항	○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요하고 있는가			
	○ 최근 2년 이내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해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정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국가산업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가 (예: 훈장 및 표창, 포상 등)			

※ 아래와 같이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점수 가산혜택(최근 3년 이내)

행사명	수상순위			평점
	1위	2위	3위	
○ 품질기술 분임조 경진대회(전국,도)	3	2	1	
○ 품질 경영 대상(전국)	3	2	1	
○ 산업표준화 대상(전국)	3	2	1	
○ 경상남도 우수기술인상	3	2	1	
○ 경남측정 우수기술인상	3	2	1	
○ 정밀도 경진대회(전국)	3	2	1	
○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전국)	3	2	1	

3. 공예품

가. 추천대상

- ① 최근 3년 이내 전국 단위 공예품 관련 공모전 입상 품목
- ② 최근 3년 이내 경남공예품경진대회 동상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
- ③ 한국적인 전통미를 적절히 표현한 지역 특산품

나. 추천기준

- ① 공예품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생산자 및 단체
- ②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다양한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생산자

다. 심사방법

- ① 완성품에 대한 실물심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 시 현지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②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평점 실시
※ 심사 시 추천상품의 샘플을 사전에 사용(시험·시식 등)해 본 조사요원의 의견이나 서면으로 제출된 검토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음

라. 판정

[별표 3호] 심사표에 의한 심의결과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추천 적합으로 판정함. 단, 상기 심사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은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판정할 수 있음

- ① 심의위원이 평점한 결과 평균 70/100 이상
- ②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 개수가 심의위원 전체 평균 1개 이하
- ③ “우수”로 평가된 항목이 “보통”으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공예품 심사표

품목	생산자	※ 평점란 원문자(○) 표기		
항 목	구 비 예 건	평 점		
		우수 (10)	보통 (5)	미흡 (3)
계				
가. 공예품 생산자의 자질과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의 수상경력(최근 3년 이내 공예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전국 단위 공모전 입상 또는 도 경진대회 동상 이상 - 보통: 도 경진대회 입선 이상 또는 시군 경진대회 동상 이상 - 미흡: "보통"에 미흡한 경우 ※ 정부 또는 자치단체 주최·주관 공예 관련 공모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의 생산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10년 이상 - 보통: 7년 이상 - 미흡: 5년 이상 			
나. 제품의 상품화 및 수출 가능성	○ 제품의 실용성 또는 장식품으로서의 적합성(용도별)			
	○ 한국적인 전통미 표현과 현대적 감각·디자인 적용			
	○ 제품 소재의 다양성과 작품의 창작성			
	○ 제품의 시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생산 가능 여부 및 대량판매 가능성 			
	○ 가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가 쉽게 선호할 수 있으며, 품질에 맞는 적절한 가격 			
	○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국산 원자재 조달 가능 여부 			
다. 품질 수준	○ 제품의 질적 수준 및 기술 수준(정교성, 완성도)			
	○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서

Gyeongsangnam-do Provincial Quality Certificate

Certified No :
지정번호

Producer :
생산자

Address :
주소

Name of the product :
품목명

Validity Period :
유효기간

We designate above as a Gyeongsangnam-do
Provincial Quality Certificate Product.

경 상 남 도 지 사
Governor of Gyeongsangnam-do